

사천시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기금설치·운영조례(안) 심사보고

(의안번호 제22호 2002. 5. 17)

총무위원회
2002. 5. 27(월)

1. 심사경과

- 가. 2002. 5. 17 사천시장 제출
- 나. 2002. 5. 17 총무위원회 회부
- 다. 2002. 5. 23 사천시의회 제65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상정

2. 제안설명요지(사회과장 강대평)

가. 제안이유

-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에 관한 여성정책개발·연구 자문과 기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사천시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기금설치·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기금설치·운영조례를 제1장 총칙, 제2장 위원회, 제3장 여성발전기금으로 구분하여 제정.
- 사천시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기금설치·운영조례 제정 시행과 동시에 사천시여성정책발전위원회조례를 폐지함.
-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에 여성정책발전위원회조례에 의하여 여성정책발전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 받은자는 이 조례에 의한 여성정책발전위원회의 위원으로 보며,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받은 날부터 기산함.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박명돈)

- 제정조례안은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정책 개발 연구 및 여성 복지 증진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, 여성 역할을 지원하기 위한 발전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법적인 문제점은 없고 시행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
5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 : 없음